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비 (안 제147조의7제1항 및 제4항)

-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함
- 2)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서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는 삭제함.
- 3)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나.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정비 (안 제213조제2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지 않도록 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보완 (안 제213조의2제3항)

현금영수증을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기재 사항 중 급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의7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귀속연도·귀속반기”를 “귀속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1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직전 과세기간”을 각각 “직전연도”로 한다.

제213조의 제목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제213조의2제3항제1호 중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를 “귀속연도”로 한다.

제214조의 제목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제216조의 제목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7제1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법 제164조의3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영 시행 전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 지급한 법 제164조의3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 제81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1. 직전 연도-----

2. (현행과 같음)

② ----- 직전 연도----- 직전 연도-----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 -- <u>간이지급명세서</u> ----- ----- ----- ----- -----.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 ----- <u>간이지급명세서</u> ----- ----- ----- ----- <u>간이지급명세서</u> ----- ----- -----.	③ ~ ⑥ (생략)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② (생략)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 2. 3. (생략)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이하 이 항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	1. ----- 귀속연도 2. 3. (현행과 같음)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간이지급명세서</u> -----

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4. (생략)

제216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1. ~ 4. (현행과 같음)

제216조(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
-- 간이지급명세서 --

1. --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 간이지급명세서 --

2. --

-- 간이지급명세서 --

②--

-- 간이지급명세서 --

신청하여야 한다.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연 락 처	(02) 2150 - 4371